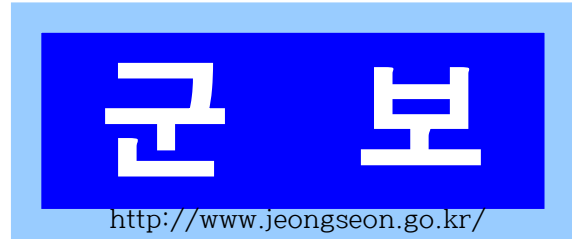


정 선 군

군보는 공문서로의 효력을 갖는다



제246호 2011. 7. 20. (수)

【조 례】

- 정선군조례 제2257호 정선군 문화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1
- 정선군조례 제2258호 정선군 체육시설물 관리 및 운영 조례..... 4
- 정선군조례 제2259호 정선군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20
- 정선군조례 제2260호 정선군 헌혈 장려 조례..... 23

【고 시】

- 정선군고시 제2011-67호 도전권역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 시행계획 고시(7차)..... 26
- 정선군고시 제2011-68호 사방지 지정해제 고시..... 27
- 정선군고시 제2011-73호 2010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결과 고시..... 29

【공 고】

- 정선군공고 제2011-416호 2011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결정통지문 공시송달 공고 39
- 정선군공고 제2011-421호 정선군 풍수해저감종합계획 공고..... 40

조 례

정선군의회에서 의결된 정선군 문화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정 선 군 수

2011. 7. 20.

정선군조례 제2257호

정선군 문화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문화원진흥법」 제3조제1항 및 제15조에 따라 정선군 문화원의 지원·육성 및 경비의 보조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정선문화원”이란 정선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문화진흥을 위하여 「지방문화원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에 따라 강원도지사의 인가를 받고 같은 법 제4조제3항에 따라 군을 사업구역으로 하는 지방문화원을 말한다.
2. “사업보조금”이란 법 제8조에 따라 정선문화원(이하 “문화원”이라 한다)이 수행하는 지역문화사업 또는 사업추진을 위한 재정상의 지원을 위하여 교부하는 자금을 말한다.
3. “운영보조금”이란 법 제15조에 따라 문화원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하기 위하여 교부하는 자금을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 법 제3조제1항에 따라 정선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문화원을 적극적으로 지원·육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4조(문화원장의 책무) 문화원장은 군의 지역문화를 진흥하기 위하여 법 제8조에서 규정하는 지역문화사업 및 그 밖에 지역문화를 진흥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을 개발하고 이를 성실히 수행할 책무를 가진다.

제5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문화원의 지원 및 육성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6조(보조금의 지원범위) ①법 제15조에 따라 문화원에 대한 보조금 지원은 사업보조금과 운영보조금으로 한다.

②제1항의 보조금 지원에도 불구하고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재산과 시설을 무상으로 대여할 수 있다.

제7조(사업보조금의 용도) 군수는 문화원이 법 제8조에 따른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고자 할 때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1. 지역고유문화의 계발·보급·보존·전승 및 선양
2. 향토사의 발굴·조사·연구 및 사료의 수집·보존
3. 지역문화행사의 개최
4. 문화에 관한 자료의 수집·보존 및 보급
5. 지역 전통문화의 국내외 교류
6. 지역문화에 관한 사회교육활동
7. 지역환경보존 등 지역사회발전을 위한 문화활동
8. 지역문화 창달을 위한 사업
9. 그 밖에 지역문화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사업

제8조(운영보조금의 용도)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의 운영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1. 문화원 상근직원에 대한 인건비
2. 문화원이 임차하여 사용하고 있는 시설의 임차료
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운영비

제9조(사무의 검사·감독) ①군수는 지원되는 보조금의 적정한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문화원장에게 관계서류, 장부 등 그 밖의 참고자료에 대하여 제출을 요구하거나,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사무 및 정산상황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군수는 검사결과 문화원 운영에 대한 개선이 필요한 경우 그 시정을 권고할 수 있다.

③문화원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제2항의 시정권고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0조(예산의 반영) 군수는 매년 예산의 범위에서 문화원을 지원·육성하기 위한 보조금을 편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1조(공무원의 파견) ①군수는 문화원장의 요청에 따라 지역문화진흥을 위하여 필

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문화원에 군 소속 공무원을 파견하여 근무하도록 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군 소속 공무원의 파견기간은 1년 이내로 하며, 파견 공무원은 보조금에 관한 업무, 그 밖에 지역문화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업무를 수행한다.

제12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아니한 보조금의 신청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은 「정선군보조금관리조례」를 준용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 정 이 유

- 「지방문화원진흥법」의 규정에 의거 정선문화원의 지원·육성 및 경비의 보조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지역문화사업의 원활한 활동을 도모하고자 함.

주 요 내 용

- 보조금의 지원범위 및 사업보조금의 용도 규정(제6조 및 제7조)
- 보조금의 적정한 집행을 위한 사무의 검사 및 시정권고 사항 규정(제9조)
- 문화원 지원·육성을 위한 보조금 편성 근거 마련(제10조)

정선군의회에서 의결된 정선군체육시설물관리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정 선 군 수

2011. 7. 20.

정선군조례 제2258호

정선군체육시설물관리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

정선군체육시설물관리운영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정선군 체육시설물 관리 및 운영 조례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정선군 체육시설물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정선군 체육시설물(이하 “체육시설”이라 한다)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체육시설 : 정선종합경기장 내의 경기시설(주경기장, 보조경기장, 실내체육관, 궁도장, 테니스장, 인라인 및 농구장), 정선국민체육센터(체육관, 수영장), 읍·면별 공공체육시설(종합운동장, 테니스장, 게이트볼장, 족구장, 풋살장, 궁도장 등)
2. 부대시설 : 제1호 시설에 부수하여 설치된 각종 시설물, 주차장, 조형물, 비품 등 그 밖의 부대설비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설의 사용”이란 제2조의 체육시설을 이용하거나 방송(텔레비전 포함), 광고물의 게시, 영화촬영, 공연, 관람 등 그 밖의 행위를 말한다.
2. “사용자”란 제4조의 사용허가를 받은 자를 말하며, “사용료”란 사용자가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
3. “이용자”란 사용자를 제외한 체육시설을 개인연습, 경기연습, 체력단련 등의 목적으로 이용하는 사람을 말하며, “이용료”란 이용자가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
4. “단체입장”이란 동일한 단체의 구성원 30명 이상이 동시에 입장하는 것을 말한다.

단, 국민체육센터 내 수영장의 단체입장은 20명 이상으로 한다.

5. “체육행사”란 공인기록경기, 국제경기 및 체육을 관장하는 기관이나 가맹 경기단체가 주관 또는 주최하는 경기를 말한다.
6. “일반행사”란 체육행사 외의 행사를 말한다.
7. “어린이”란 초등학교 학생과 7세 이상 12세 이하의 사람을 말한다.
8. “청소년”이란 13세 이상 18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9. “군인”이란 「병역법」에 따라 복무중인 사람으로 의무현역사병, 전환복무자, 상근예비역, 공익근무요원을 말한다.
10. “성인”이란 19세 이상의 사람을 말하며, 65세 이상인 사람은 경로대상자로 한다.
11. “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을 말한다.

제2장 체육시설

제4조(사용허가) ①체육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사용허가 신청서를 사용예정일 10일 전까지 정선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허가내용을 변경 또는 취소하고자 할 때에는 사용예정일 2일 전까지 별지 제2호 및 제3호 서식에 따라 변경 또는 취소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군수가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 한다.

③군수는 제1항의 사용허가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사용허가 여부와 사용료를 사용허가신청서 접수 후 2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알려 주어야 한다.

④사용자는 사용료를 납입하고 사용허가서를 교부 받음으로써 허가를 갈음한다.

제5조(사용허가의 우선순위) 군수는 체육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의하여 허가한다.

1. 국가 또는 정선군(이하 “군”이라 한다)이 주최 또는 주관하는 행사
2. 체육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각종 경기대회 및 행사
3.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해당하는 각급 학교에서 주관하는 행사 및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행사
4. 체육활동 이외의 문화행사, 공연, 관람, 전시 등 행사
5. 직장 및 동호인 등 다수인이 참석하는 행사
6. 경기연습, 개인연습, 체력단련 등의 체육활동
7. 제1호부터 6호까지 외의 행사 등

제6조(사용허가 제한 등)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체육시설 사용을 허가하지 아니한다.

1.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때
2. 시설 관리상 지장이 있다고 인정할 때
3. 공익상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때
4. 그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제7조(시설의 개방) ①체육시설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주민건강증진을 위한 체육활동의 장으로 개방하여야 하며, 관리비 부족 등의 사유로 개방을 제한할 수 없다.

②군수는 개방하고자 하는 체육시설에 각 시설별로 상설 스포츠 교실을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연간, 월간, 주간, 일간 주민 이용계획을 수립하여 매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주민이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하여야 한다.

1. 개방시설별 이용기간 및 시간 이용수칙 등
2. 상설스포츠 교실의 종류 및 이용방법
3. 시설종류별 사용료, 무료시설의 범위 및 이용방법

③군수는 개방하고자 하는 체육시설에 주민이 이용할 수 있는 기본적인 운동기구와 제18조에 규정된 체육지도자를 배치할 수 있다.

④군수는 소관 체육시설의 활용실태를 매분기별로 점검하고 활용도 제고를 위한 대주민 홍보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⑤군수는 개방계획 수립 시 각종 경기대회, 행사 및 시설의 보수, 휴무일 등을 고려하여 신축성 있게 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8조(개방제한 등)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사용허가를 취소·제한·정지·변경 하거나 그밖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부득이한 사유로 체육시설의 개방제한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개방제한 사유 및 제한기간 등을 지체 없이 고지하여야 한다.

1. 시설의 개·보수
2. 시설의 이용 시 현저한 위험이 예상될 때
3. 군수 및 읍·면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제9조(사용시간) ①수영장을 제외한 체육시설의 사용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하절기(3월~10월) : 오전 5시부터 오후 10시 까지
2. 동절기(11월~다음해 2월) : 오전 6시부터 오후 10시 까지

②수영장의 개장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10시까지로 하며, 휴장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1월 1일
2. 설날
3. 추석
4. 매주 월요일
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휴장일(이 경우 사전에 정하여 게시하여야 한다.)

제10조(사용료 등) ①체육시설의 사용료 및 이용료는 별표 1과 같다. 단, 사용료 및 이용료는 정선종합경기장과 정선국민체육센터에 한하여 적용한다.

②사용자 또는 이용자는 별표 1의 기준에 의한 사용료 및 이용료를 사전에 납부 하여야 한다.

제11조(중계방송 및 상행위 사용료) ①체육시설의 중계방송 사용료는 별표 2와 같다.

②체육시설의 상행위 사용료는 별표 3과 같다.

제12조(사용료의 감면) ①군수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최·주관하는 경기 및 행사
2. 전국 또는 도 단위 체육대회, 도 생활체육대회 출전선수의 대회출전일 14일 이내 훈련
3. 도·시 대표선수단의 대회 출전일 14일 이내 강화훈련(생활체육 및 장애인 체육선수단 포함)
4.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에 따른 보훈대상자 단체 경기 및 행사
5.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단체 경기 및 행사
6. 「노인복지법」에 따른 65세 이상 경로우대 노인 단체의 경기 및 행사
7. 군이 후원하는 체육단체에서 주관하는 경기 및 행사

②군수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100분의 50을 경감 할 수 있다.

1. 체육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기 및 행사
2. 청소년 육성을 위하여 청소년단체에서 주관하는 경기 및 행사
3.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등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설치된 군 관내 학교의 체육대회
4. 「영유아보육법」에 따라 설치된 군 관내 보육시설의 체육행사

③그 밖에 군수가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사용료를 면제하거나 100분

의 50을 경감할 수 있다.

④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감면대상자에 해당하는 경우 사용자는 별지 제3호 서식의 사용료 감면신청서를 사용허가 신청서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감면할 경우에도 부대시설 사용료는 징수할 수 있다.

제13조(사용료의 반환) 납부된 사용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사용료 및 이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한다.

1.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사용예정일 2일 전까지 그 사용을 취소한 때 : 100분의 70
2. 체육시설의 유지 및 관리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어 일시 정지된 경기 및 행사로서 정지된 시간만큼 연장할 수 없을 경우 : 전부
3. 천재지변 및 우천 등으로 사용이 전혀 불가능할 때 : 전부

제14조(사용허가 취소 및 정지) ①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사용허가를 취소 또는 정지할 수 있다.

1. 사용허가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허가조건을 위반한 때
2. 체육시설의 유지·관리상 지장이 있다고 인정될 때
3. 경기장 질서 유지가 심히 어려울 때

②제1항의 처분으로 사용자에게 손해를 미치더라도 군수는 책임을 지지 아니하며 이미 납부한 사용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제15조(사용자의 부대시설) ①사용자가 사용기간 중 필요한 설비를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군수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설비의 설치와 철거비용은 사용자 부담으로 한다.

③사용자는 사용기간 종료와 동시에 이를 철거하고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만일 원상복구 하지 아니 한 때에는 군수가 이를 대집행하고 그 비용은 사용자로부터 징수한다.

제16조(양도 금지) 이 조례에 의하여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군수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고 그 허가사항을 양도할 수 없다.

제17조(손해배상) ①사용자의 귀책사유에 의하여 체육시설을 손상하였을 경우 사용자는 손상한 체육시설을 원상복구 하거나 손해를 즉시 배상하여야 한다.

②사용자가 주관하는 행사 및 경기로 인하여 체육시설 내에서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 사용자는 민사 또는 형사상 책임을 진다.

제18조(체육지도자 배치) 군수는 체육시설의 사용 및 사용자에 대한 경기규칙 및 체육활동 전반에 대한 지도를 위하여 체육지도자를 배치할 수 있다.

제19조(체육시설의 관리) ①군수는 체육시설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여야 하며, 체육시설의 종류별 규모에 적절한 전문 관리인을 확보·배치하여 주민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②읍·면별 공공체육시설의 관리는 시설물 소재지 관할 읍·면장이 관리한다.

제20조(체육시설관리운영위원회) 군수는 체육시설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체육시설관리운영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

제3장 보칙

제21조(위탁관리) ①군수는 체육시설의 효율적인 관리 및 활용을 위하여 경기단체, 생활체육 관련단체 및 정선군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하여 운영 할 수 있다.

②군수는 경기장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하는 경우 위·수탁 관리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이 경우 수탁자는 각종 공공요금 등을 자체 납부하여야 한다.

③군수는 시설물 관리 및 위탁 사무를 읍·면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④제1항에 따른 위탁 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

제22조(위·수탁자의 의무) ①위·수탁 관리자는 체육시설에 대하여 계약조건에 따라 책임과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②위·수탁관리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의무를 소홀히 하여 경기장 이용자에게 피해가 발생하거나 시설물 및 장비를 훼손 또는 망실 하였을 때에는 원상복구하거나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에 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23조(위·수탁의 취소)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 하였을 때에는 위·수탁을 취소할 수 있다.

1. 수탁관리자가 제22조의 의무를 위반한 때
2. 수탁관리자가 운영·관리 능력이 없다고 인정될 때
3. 수탁관리자가 위·수탁관리 계약조건을 위반한 때
4. 군수가 공익상 시설물을 위탁관리 할 수 없다고 인정할 때

제24조(수탁관리자의 시설물 설치) ①수탁관리자는 군수의 승인을 얻어 수탁관리자의 부담으로 필요한 시설물을 설치하거나 특별한 설비를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설물 또는 설비는 당해 시설물 준공 또는 설비완료와 동시에 군에 기부채납 할 것을 전제로 한다.

제25조(준용) 사용료·이용료 및 변상금 징수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지방세징수의 예에 따른다.

제26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정선군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1항에 제6호의7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의7. 정선종합경기장 및 국민체육센터 관리·운영

[별표 1]

사용료 및 이용료(제10조 관련)

○ 정선종합경기장 사용료

(단위: 원)

시 설 명	사용구분	평 일	휴 일	비 고
주경기장 (천연잔디구장)	체육행사	97,000	126,000	
	일반행사	180,000	230,000	
	연습사용	90,000	114,000	
보조경기장 (인조잔디구장)	체육행사	30,000	40,000	
	일반행사	60,000	80,000	
	연습사용 (단체)	6,000	6,000	2시간 기본/팀당
	연습사용 (개인)	2,000	2,000	2시간 기본
육상트랙	체육행사	38,000	51,000	
	일반행사	92,000	127,000	
	연습사용 (단체)	6,500	7,300	2시간 기본/팀당
	연습사용 (개인)	1,400	1,600	2시간 기본
체육관	체육행사	74,000	89,000	
	일반행사	138,000	198,000	
	연습사용 (단체)	81,000	91,000	2시간 기본/팀당
	연습사용 (개인)	1,000	1,300	2시간 기본
실외인라인장 (농구장 포함)	무 료			
테니스장숙소동	2인1실		4인1실	
	15,000		30,000	

※ 1일 기준

○ 정선국민체육센터 사용료 및 이용료

(단위: 원)

시 설 명	이용 구분	어 른	청소년/군인	어린이/경로	비 고
수영장	개인 월 정기이용	52,500	41,000	30,000	
	개인 일일이용	2,500	2,000	1,400	
	단체 일일이용	2,000	1,300	1,000	20명 이상
	사용 구분	평 일		휴 일	비 고
	체 육 행 사	150,000		200,000	
	일 반 행 사	200,000		250,000	
체육관	사용 구분	평 일		휴 일	비 고
	체 육 행 사	74,000		89,000	
	일 반 행 사	138,000		198,000	
	연습사용(단체)	81,000		91,000	2시간기본
	연습사용(개인)	1,000		1,300	2시간기본

○ 정선군 체육시설 부대시설 사용료

구 분	수량/ 단위	사용료	비 고
전 기	1 KW당	관허요금	기본요금 + (시간당사용요금 x 사용시간)
수 도	1 일	20,000	입장객 500명이하
		40,000	입장객 501~1,000명이하
		60,000	입장객 1,001~5,00명이하
		80,000	입장객 5,001~10,000명이하
		100,000	입장객 10,000명이상
샤 위	1인 1회	400	
마 이 크	1일 1대	5,000	
방송음향	1 일	40,000	

[별표 2]

중계방송 사용료 (제11조 관련)

(단위: 원)

구 분			금 액	비 고
TV 중계방송	체육경기	국내	25,000	
		국제	50,000	
	체육경기 외	국내	20,000	
		국제	50,000	
인터넷 중계	체육경기	국내	20,000	
		국제	45,000	
	체육경기 외	국내	20,000	
		국제	45,000	
지역제한 TV 중계방송	체육경기	국내	15,000	
		국제	25,000	
	체육경기 외	국내	10,000	
		국제	20,000	
영화촬영			50,000	
경기촬영			30,000	
TV 녹화			TV 중계방송의 50%	
라디오 녹음			라디오 중계방송의 50%	

※ 사용료는 행사 주관자가 책임 납부

[별표3]

상행위 사용료 (제11조 관련)

(단위: 원)

구 분	수량/단위	사용료	비 고
프로그램 판매 행위	반입부수	가격 총액의 20% 상당액	
시설물에 부착 · 진열 · 게시되는 광고물	12㎡이내 개당	5,000	1일 기준
	12㎡초과 개당	10,000	
	현수막 ㎡당	1,000	
애드벌룬 및 유사게시물에 의한 광고 행위	개당 일간	5,000	
전광판광고물	1회 당	10,000	

※ 사용료는 행사 주관자가 책임 납부

[별지 제1호 서식]

정선군 체육시설물 사용허가 신청서 (제4조 관련)

신청인	단체명		주민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성명 (대표자)		전화번호	
	주소			
사용구분		1. 체육행사 3. 연습사용	2. 일반행사	행사명
사용 시설	기본시설	종합경기장	1. 주경기장 2. 보조경기장 3. 육상트랙 4. 체육관 5. 인라인장 (농구장포함)	
		국민체육센터	1. 수영장 2. 체육관 3. 헬스장	
	부대시설	1. 조 명 (시간) 2. 음 향 (일) 3. 샤 위 (명) 4. 수 도 (입장객 수 : 명) 5. 마이크 (대) 6. 냉난방 (사용 / 미사용) 7. 숙 박 (일) 8. 중계방송 (실시 / 미실시) 9. 상행위 (유 / 무) 10. 기 타 ()		
		상행위	1. 프로그램 판매행위 (가격총액 : 원) 2. 시설물에 부착·진열·게시되는 광고물 (개) 3. 애드벌룬 및 유사게시물 (개) 4. 전광판 광고물 (회)	
사용 기간	년 월 일 요일 시 분 부터 년 월 일 요일 시 분 까지 (일 시간)			
사용자가 설치 하는 부대시설				
입장료	어른 : 원, 청소년 : 원 어린이 : 원, 단 체 : 원			무
「정선군 체육시설물 관리 및 운영 조례」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정선군수 귀하				

210mm×297mm[일반용지 60g/m²(재활용품)]

[별지 제2호 서식]

정선군 체육시설물 사용변경 신청서 (제4조 관련)

신청인	단체명		주민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성명 (대표자)		전화번호	
	주소			
사용구분		1. 체육행사 3. 연습사용	2. 일반행사	행사명
사용시설	기본시설	종합경기장	1. 주경기장 2. 보조경기장 3. 육상트랙 4. 체육관 5. 인라인장 (농구장포함)	
		국민체육센터	1. 수영장 2. 체육관 3. 헬스장	
	부대시설	1. 조 명 (시간) 2. 음 향 (일) 3. 샤 워 (명) 4. 수 도 (입장객 수 : 명) 5. 마이크 (대) 6. 냉난방 (사용 / 미사용) 7. 숙 박 (일) 8. 중계방송 (실시 / 미실시) 9. 상행위 (유 / 무) 10. 기 타 ()		
사용기간	년 월 일 요일 시 분 부터 년 월 일 요일 시 분 까지 (일 시간 회)			
변경신청 내용				
차액 환불계좌		예금주 : 은행명 및 계좌번호 :		
「정선군 체육시설물 관리 및 운영 조례」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정선군수 귀하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3호 서식]

정선군 체육시설물 사용취소 신청서 (제4조 관련)

신청인	단체명		주민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성명 (대표자)		전화번호	
	주소			
사용구분		1. 체육행사 3. 연습사용	2. 일반행사	행사명
사용 시설	기본시설	종합경기장	1. 주경기장 2. 보조경기장 3. 육상트랙 4. 체육관 5. 인라인장 (농구장포함)	
		국민체육센터	1. 수영장 2. 체육관 3. 헬스장	
	부대시설	1. 조 명 (시간) 2. 음 향 (일) 3. 샤 워 (명) 4. 수 도 (입장객 수 : 명) 5. 마이크 (대) 6. 냉난방 (사용 / 미사용) 7. 숙 박 (일) 8. 중계방송 (실시 / 미실시) 9. 상행위 (유 / 무) 10. 기 타 ()		
사용 기간	년 월 일 요일 시 분 부터 년 월 일 요일 시 분 까지 (일 시간 회)			
취소사유				
환불계좌		예금주 : 은행명 및 계좌번호 :		
「정선군 체육시설물 관리 및 운영 조례」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정선군수 귀하				

210mm×297mm[일반용지 60g/m²(재활용품)]

[별지 제4호 서식]

정선군 체육시설물 사용료 감면신청서 (제12조 관련)

신청인	단체명		주민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성명 (대표자)		전화번호	
	주소			
사용구분		1. 체육행사 3. 연습사용	2. 일반행사	행사명
사용시설	기본시설	종합경기장	1. 주경기장 2. 보조경기장 3. 육상트랙 4. 체육관 5. 인라인장 (농구장포함)	
		국민체육센터	1. 수영장 2. 체육관 3. 헬스장	
	부대시설	1. 조 명 (시간) 2. 음 향 (일) 3. 샤 워 (명) 4. 수 도 (입장객 수 : 명) 5. 마이크 (대) 6. 냉난방 (사용 / 미사용) 7. 숙 박 (일) 8. 중계방송 (실시 / 미실시) 9. 상행위 (유 / 무) 10. 기 타 ()		
사용기간	년 월 일 요일 시 분 부터 년 월 일 요일 시 분 까지 (일 시간 회)			
감면사유				
입증서류				

「정선군 체육시설물 관리 및 운영 조례」 제12조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료 감면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정선군수 귀하

210mm×297mm[일반용지 60g/m²(재활용품)]

개 정 이 유

- 정선종합경기장과 국민체육센터 건립에 따른 기존의 정선군체육시설물관리운영조례를 전부개정하여 각종 시설물에 대한 사용료 징수 등 효율적인 관리를 도모하고자 함.

주 요 내 용

- 체육시설 적용범위 확대 개정(제2조)
- 시설물 사용허가 및 제한 등 개정(제4조 및 제6조)
- 사용료 및 입장료 징수규정 개정(제10조)
- 효율적인 관리를 위한 위탁 관리 개정(제21조부터 제24조)

정선군의회에서 의결된 정선군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정 선 군 수

2011. 7. 20.

정선군조례 제2259호

정선군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보건법」 제26조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부과대상) 과태료 부과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지역보건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18조의 규정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신고하고 건강진단 등을 행한 자
2. 법 제21조 규정을 위반하여 유사명칭을 사용한 자

제3조(부과기준) 법 제26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

제4조(과태료 부과 및 징수절차) 이 조례에 의한 과태료 부과 및 징수 절차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 및 「행정절차법」에 따른다.

제5조(과태료의 부과·징수) 과태료는 정선군수가 부과·징수한다.

제6조(준용규정) 과태료의 부과·징수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이외의 사항은 지방세 징수의 예에 의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과태료 부과기준 (제3조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가 둘 이상일 때에는 각 위반행위에 따라 각각 부과한다.

나. 위반행위에 따른 과태료의 상향 부과기준은 각 위반행위 별로 동일위반 행위의 횟수가 최초 위반행위를 한 날부터 1년 이내에 1차 이상 위반한 경우에 적용한다.

2. 개별기준

부 과 대 상	근 거 법 령	부과금액(만원)		
		1차위반	2차위반	3차위반
1.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신고하고 건강진단 등을 행한 자	법제26조제1항제1호	100	200	300
2.법 제21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유사명칭을 사용한 자	법제26조제1항제2호	100	200	300

제 정 이 유

- 「지역보건법」 제26조의 규정에 의거 「지역보건법」 제18조 건강진단 등의 신고 조항 및 같은 법 제21조 유사명칭사용금지 조항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및 징수에 관한 규정을 마련하고자 함.

주 요 내 용

- 과태료 부과기준을 별표와 같이 규정(제3조)

부 과 대 상	부과금액(만원)		
	1차위반	2차위반	3차위반
○ 의료기관 아닌 자가 건강진단·예방접종 또는 순회 진료 등 주민의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하면서 보건소장에게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신고한 경우	100	200	300
○ 의료기관이 의료기관 외의 장소에서 지역주민 다수를 대상으로 건강진단을 실시하면서 보건소장에게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신고한 경우			
○ 보건소, 보건지소가 아니면서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경우	100	200	300

정선군의회에서 의결된 정선군 헌혈 장려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정 선 군 수

2011. 7. 20.

정선군조례 제2260호

정선군 헌혈 장려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혈액관리법」 제4조의 규정과 관련하여 원활한 혈액 수급을 위한 헌혈 권장활동으로 군민의 자발적인 헌혈 활동을 장려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헌혈 권장활동”이란 「혈액관리법」 제4조 및 「혈액관리법 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따라 건강한 군민에게 헌혈을 권장하는 행위를 말한다.
2. “헌혈 장려사업”이란 헌혈 권장 활동을 통하여 군민의 헌혈정신을 고취하고 헌혈 활동을 증진함으로써 혈액수급이 안정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사업을 말한다.
3. “헌혈 자원봉사활동”이란 개인 또는 단체가 헌혈활동을 증진하기 위하여 대가없이 자발적으로 헌혈 권장활동에 시간과 노력을 제공하는 행위를 말한다.

제3조(정선군수의 책무) 정선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헌혈 권장활동을 통하여 헌혈 정신을 고취하고 헌혈 활동을 장려하는데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헌혈 장려사업 계획의 수립) ①군수는 군민의 헌혈활동 증진을 위하여 매년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헌혈 장려사업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 헌혈 장려사업의 기본방향
2. 헌혈에 관한 교육·홍보 및 상담에 관한 사항
3. 헌혈 장려를 위한 재정지원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헌혈 장려사업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

②군수는 해당연도의 헌혈 장려사업에 대한 결과를 분석·평가하고, 그 결과를 다음 연도 사업계획 수립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5조(헌혈자에 대한 지원) 헌혈 장려 및 헌혈문화 활성화를 위하여 관내에서 헌혈하

는 사람에게 소정의 기념품을 지원할 수 있다.

제6조(헌혈 자원봉사활동 등에 대한 지원) ①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군민의 헌혈활동을 증진할 목적으로 헌혈 자원봉사활동을 추진하는 비영리법인·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예산 지원의 절차 및 방법 등에 대해서는 「정선군보조금관리조례」 및 「정선군자원봉사활동지원조례」에 따른다.

제7조(포상) 군수는 헌혈 및 헌혈 장려에 특히 공이 있는 사람 및 단체 등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이 경우 포상의 종류와 방법 및 절차는 「정선군 포상조례」에 따른다.

제8조(헌혈홍보활동) 군수는 주민들에게 헌혈 자원봉사활동을 유도하고 헌혈에 대한 참여를 촉진하기 위하여 헌혈 활성화를 위한 홍보활동을 실시한다.

제9조(관련정보제공) 군수는 헌혈 장려사업과 관련된 정보를 지속적으로 관리하여 주민에게 최신정보가 제공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 정 이 유

- 헌혈 장려 조례 제정으로 헌혈사업 활성화 및 원활한 혈액수급을 도모하고자 함.

주 요 내 용

- 헌혈 장려사업 계획수립 및 평가 실시(제4조)
- 관내에서 헌혈하는 사람에게 기념품 제공(제5조)
- 헌혈 자원봉사 단체에 대한 예산 지원(제6조)
- 유공자 포상 및 헌혈 관련정보 제공(제7조 및 제9조)

고 시

정선군고시 제2011-67호

도전권역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 시행계획(7차) 고시

정선군 임계면 도전권역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 시행계획(7차)을 농어촌정비법 제 59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1. 7. 7.

정 선 군 수

1. 사 업 명 : 도전권역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2. 사업의 목적**

농촌마을의 경관개선, 생활환경정비, 소득기반확충 등을 통해 지역주민이 살고 싶고 도시민이 찾고 싶은 쾌적한 정주공간으로 조성해 희망과 활력을 고취함으로써 지역사회의 지속적 유지

3. 사업의 내용 및 구역

- 위 치 : 강원도 정선군 임계면 가목리, 도전1·2리, 직원1·2리
- 규 모 : 법정리 3, 행정리 5, 자연마을 15
- 면 적 : 7,008ha(농경지 330, 임야 6,501, 기타 177)
- 가구 및 면적 : 187호(농가 121, 비농가 66), 460명(남 250, 여 210)
- 사업내용(7차) : 소득기반 1개사업 - 농산촌문화체험시설

4. 사 업 비 : 550백만원(자부담 138백만원 미포함)

※ 전체분 : 6,201백만원(자부담 585백만원 미포함)

5. 사업예정기간 : 2011. 7~ 2011. 12(전체분 2007년 ~ 2011년)**6. 사업의 효과**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으로 인하여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 및 농촌사회의 지속적인 발전에 기여

7. 사업시행자 : 정선군수(일괄위탁 : 한국농어촌공사 원주지사)**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정선군고시 제2011-68호

사 방 지 지 정 해 제 고 시

사방사업법 제20조제1항 규정에 의하여 다음의 사방지정지를 해제하고 사방사업법시행령 제2조 규정에 의하여 이를 해제고시 합니다.

2011. 07. 12.

정 선 군 수

1. 사방지 해제내역

- 가. 위 치 : 정선군 임계면 임계리 산8-12번지
- 나. 해제면적 : 2,400m²
- 다. 해제대상 : 사방댐

2. 사방지 해제사유

사방사업법 제20조제1항제2호 및 사방사업법시행령 제17조제2항 규정에 의거 지방자치단체가 그 시책으로 권장하는 사업(수목원조성)시행을 위함

3. 열람 및 문의사항

사방지 해제관련 도면 및 자세항 사항은 정선군청 산림정책과(033-560-244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 사방지 지정해제내역 1부.

사방지 해제내역

강원도 정선군

일련 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	해제내역		사방 종류	지정고시 번호	해제사유
	읍·면	리·동				지정면 적	해제면 적			
1	임계	임계	산8-12	임	6,746,173	2,400	2,400	사방담	2006-19	수목원 조성

사방지 지정 구역도



지정 및 해제내역

토지소재지	지번	지 목	면적(㎡)	지정면적(㎡)	해제면적(㎡)	고시번호	고시년월
정선군 임계면 임계리	산8-12	임	6,746,173	2,400	2,400	2006-19	2006.4.18

정선군고시 제2011-73호

2010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결과 고시

2010회계연도 정선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내역을 지방자치법 제 125조 및 제134조제2항 규정에 의하여 정선군의회로 부터 승인 받은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1. 07. 18.

정 선 군 수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내역

1. 결산개황

(단위:원)

회계별	예산현액 ㉠	세입결산액 ㉡	세출결산액 ㉢	잉여금 ㉡-㉢
합 계	394,141,760,630	397,265,478,777	317,048,262,987	80,217,215,790
일 반 회 계	357,666,712,020	361,095,719,790	284,721,223,330	76,374,496,460
특 별 회 계	36,475,048,610	36,169,758,987	32,327,039,657	3,842,719,330
상수도사업특별회계	8,825,752,000	8,647,726,346	6,926,157,177	1,721,569,169
기타특별회계	27,649,296,610	27,522,032,641	25,400,882,480	2,121,150,161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586,291,000	593,636,800	552,030,040	41,606,760
정선군임대아파트 관리운영특별회계	341,719,000	354,972,088	187,699,860	167,272,228
농공단지조성 및 관리사업특별회계	41,987,000	42,367,354	20,000,000	22,367,354
기반시설부담금 특별회계	568,895,000	520,825,978	53,601,810	467,224,168
장기미집행시설 대지보상특별회계	623,068,000	623,167,350	618,108,320	5,059,030
주택사업특별회계	130,121,000	25,443,660	0	25,443,660
주차장특별회계	641,479,000	671,426,016	613,748,220	57,677,796
수질개선특별회계	24,715,736,610	24,690,193,395	23,355,694,230	1,334,499,165

2. 세입·세출 결산 현황

가. 세입결산

(단위:원)

회계별	예산현액 ㉠	징수결정액 ㉡	수 납 액 ㉢	미수납액 ㉡-㉢
합 계	394,141,760,630	403,011,488,808	397,265,478,777	5,746,010,031
일반회계	357,666,712,020	365,978,386,580	361,095,719,790	4,882,666,790
특별회계	36,475,048,610	37,033,102,228	36,169,758,987	863,343,241
상수도사업특별회계	8,825,752,000	8,968,955,066	8,647,726,346	321,228,720
기타특별회계	27,649,296,610	28,064,147,162	27,522,032,641	542,114,521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586,291,000	593,636,800	593,636,800	0
정선군임대아파트 관리운영특별회계	341,719,000	354,972,088	354,972,088	0
농공단지조성 및 관리사업특별회계	41,987,000	42,367,354	42,367,354	0
기반시설부담금 특별회계	568,895,000	520,825,978	520,825,978	0
장기미집행시설 대지보상특별회계	623,068,000	623,167,350	623,167,350	0
주택사업특별회계	130,121,000	25,443,660	25,443,660	0
주차장특별회계	641,479,000	1,128,370,951	671,426,016	456,944,935
수질개선특별회계	24,715,736,610	24,775,362,981	24,690,193,395	85,169,586

나. 세출결산

(단위:원)

회계별	예산액 ㉔	예산현액 ㉕	지출액 ㉖	이월액 ㉗	집행잔액 ㉕-㉖-㉗
합 계	354,875,590,000	394,141,760,630	317,048,262,987	64,189,555,680	12,903,941,963
일반회계	318,837,332,000	357,666,712,020	284,721,223,330	63,088,144,510	9,857,344,180
특별회계	36,038,258,000	36,475,048,610	32,327,039,657	1,101,411,170	3,046,597,783
상수도사업특별회계	8,784,282,000	8,825,752,000	6,926,157,177	11,970,000	1,887,624,823
기타특별회계	27,253,976,000	27,649,296,610	25,400,882,480	1,089,441,170	1,158,972,960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586,291,000	586,291,000	552,030,040	0	34,260,960
정선군임대아파트 관리운영특별회계	341,719,000	341,719,000	187,699,860	0	154,019,140
농공단지조성 및 관리사업특별회계	41,987,000	41,987,000	20,000,000	0	21,987,000
기반시설부담금 특별회계	568,895,000	568,895,000	53,601,810	454,630,300	60,662,890
장기미집행시설 대지보상특별회계	623,068,000	623,068,000	618,108,320	0	4,959,680
주택사업특별회계	130,121,000	130,121,000	0	0	130,121,000
주차장특별회계	641,479,000	641,479,000	613,748,220	0	27,730,780
수질개선훈특별회계	24,320,416,000	24,715,736,610	23,355,694,230	634,810,870	725,231,510

다. 기능별·성질별 현황

(1) 일반회계

(단위 : 원)

세 입			세 출		
구 분	결 산 액		구 분	결 산 액	
계	수납금액	비율	계	지출금액	비율
	361,095,719,790	100		284,721,223,330	100
1. 지방세	31,791,843,380	8.80	1. 일반공공행정	18,743,745,045	6.58
보통세	30,861,693,080	8.55	2. 공공질서및안전	9,177,054,110	3.22
목적세	626,500,640	0.17	3. 교육	4,226,072,100	1.48
지난년도수입	303,649,660	0.08	4. 문화및관광	23,636,379,331	8.30
2. 세외수입	76,805,159,900	21.27	5. 환경보호	19,473,503,680	6.84
재산임대수입	563,641,250	0.16	6. 사회복지	37,643,131,079	13.22
사용료수입	2,680,995,965	0.74	7. 보건	3,988,955,080	1.40
수수료수입	691,583,080	0.19	8. 농림해양수산	39,358,345,005	13.82
사업수입	11,084,161,030	3.07	9. 산업·중소기업	2,083,045,960	0.73
징수교부금	375,112,020	0.10	10. 수송및교통	12,194,961,860	4.28
이자수입	1,486,976,020	0.41	11. 국토및지역개발	80,154,136,450	28.15
재산매각	2,682,981,180	0.74	12. 예비비	0	0.00
잉여금	15,037,217,000	4.16	13. 기타	34,041,893,630	11.96
이월금	39,840,706,320	11.03	1. 인건비	31,778,093,450	11.16
융자금원금수입	123,886,080	0.03	2. 물건비	15,415,655,180	5.41
부담금	2,578,830	0.00	3. 경상이전	58,201,371,418	20.44
잡수입	1,547,138,800	0.43	4. 자본지출	167,725,253,102	58.91
지난년도수입	688,182,325	0.19	5. 보전재원	1,250,000,000	0.44
3. 지방교부세	110,343,195,000	30.56	6. 내부거래	9,337,551,000	3.28
4. 재정보전금	3,229,572,000	0.89	7. 예비비및기타	1,013,299,180	0.36
5. 보조금	138,925,949,510	38.47			
국비보조금	119,290,786,000	33.04			
도비보조금	19,635,163,510	5.44			

(2)특별회계

(단위:원)

구 분		예산현액	세입결산액	세출결산액	비 고
합 계		36,475,048,610	36,169,758,987	32,327,039,657	
상수도사업특별회계		8,825,752,000	8,647,726,346	6,926,157,177	
기타특별회계		27,649,296,610	27,522,032,641	25,400,882,480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586,291,000	593,636,800	552,030,040	
	정선군임대아파트 관리운영특별회계	341,719,000	354,972,088	187,699,860	
	농공단지조성 및 관리사업특별회계	41,987,000	42,367,354	20,000,000	
	기반시설부담금 특별회계	568,895,000	520,825,978	53,601,810	
	장기미집행시설 대지보상특별회계	623,068,000	623,167,350	618,108,320	
	주택사업특별회계	130,121,000	25,443,660	0	
	주차장특별회계	641,479,000	671,426,016	613,748,220	
	수질개선특별회계	24,715,736,610	24,690,193,395	23,355,694,230	

3. 군민 부담 상황

가. 세목별 군세 징수현황

(단위:원)

세목별	징수목표액 ㉠	부과액 ㉡	징수액 ㉢	불납결손액 ㉣	미 수 액 ㉡-(㉢+㉣)
계	30,281,472,000	33,873,403,160	31,791,843,380	245,840,150	1,835,719,630
주민세	351,132,000	392,922,530	366,600,670	262,650	26,059,210
재산세	3,590,000,000	3,906,603,550	3,697,535,940	9,632,520	199,435,090
자동차세	2,150,361,000	2,809,103,520	2,452,269,820	4,431,710	352,401,990
도축세	59,820,000	62,005,240	62,005,240	0	0
담배소비세	4,000,160,000	4,421,359,670	4,421,359,670	0	0
주행세	2,265,999,000	2,487,438,760	2,487,438,760	0	0
지방소득세	17,034,000,000	17,701,471,400	17,374,482,980	781,100	326,207,320
도시계획세	600,000,000	686,193,500	626,500,640	2,225,630	57,467,230
지난년도수입	230,000,000	1,406,304,990	303,649,660	228,506,540	874,148,790

나. 군세 부담액 현황

(단위:원,명,세대)

군민1인당 부 담 액	세대당 부담액	인구수 및 세대수		비 고
		인구수	세대수	
774,560	1,654,963	41,045	19,210	

4. 채권 운용 상황

(단위:원)

회계별	전년도말 ㉠	2010년 운용상황		2010년도말 ㉠+㉡-㉢
		발생액㉡	소멸액㉢	
계	2,763,000,000	3,565,977,320	899,437,920	5,429,539,400
일반회계	2,276,000,000	451,255,020	389,837,520	2,337,417,500
특별회계	327,000,000	2,791,232,330	327,000,000	2,791,232,330
기 금	160,000,000	323,489,970	182,600,400	300,889,570

5. 채무 운용 상황

(단위:원)

회계별	전년도말 ㉠	2010년 운용상황		2010년도말 ㉠+㉡-㉢
		발생액㉡	소멸액㉢	
일반회계	22,788,000,000	0	1,250,000,000	21,538,000,000

6. 기금 운용 상황

(단위:원)

구 분	전년도말 현 재 액 ㉠	당해연도 증감액㉡			당해연도말 현 재 액 ㉠+㉡
		계	수납액	지출액	
합 계	30,567,061,150	4,569,064,003	4,968,899,043	399,835,040	35,136,125,153
청사건립기금	18,524,620,663	3,499,564,396	3,499,564,396	0	22,024,185,059
사회복지기금	3,792,259,557	26,221,055	123,106,055	96,885,000	3,818,480,612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	217,274,894	34,357,127	46,357,127	12,000,000	251,632,021
농업농촌발전안전기금	7,080,784,860	1,002,816,440	1,002,816,440	0	8,083,601,300
재난관리기금	824,275,185	△8,439,502	277,374,538	285,814,040	815,835,683
식품진흥기금	127,845,991	14,544,487	19,680,487	5,136,000	142,390,478

7. 공유재산 상황

가. 공유재산

(단위:천원)

구 분		전년도말 현 재 액 ㉠	2010년도 증감액		2010년말 현 재 액 ㉠+㉡-㉢
			증㉡	감㉢	
계		621,452,322	206,873,913	78,078,711	750,247,523
행정 재산	소 계	405,928,482	99,050,200	76,222,323	428,756,359
	공공용재산	237,558,288	83,026,362	59,796,128	260,788,521
	공용 재산	165,845,719	3,577,298	16,352,762	153,070,256
	기업용재산	2,513,981	12,446,540	73,433	14,887,088
	보 존 재 산	10,494	-	-	10,494
일 반 재 산		215,523,840	107,823,713	1,856,388	321,491,164

나. 물 품

(단위:개, 천원)

정수	전년도말현재액 ㉠		2010년도 증감액				2010년말 현재액 ㉠+㉡-㉢	
	건수	금액	취득㉡		처분㉢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32	286	3,388,452	48	495,671			334	3,884,123

8. 공기업 운영현황(상수도사업)

가. 대차대조표

(단위 : 원)

과 목	금 액		증 감
	2010년도(당기)	2009년도(전기)	
1. 유동자산	2,080,109,219	1,413,089,583	667,019,636
가. 당좌자산	2,039,753,839	1,394,223,453	645,530,386
○ 현금예금	1,764,541,859	1,159,485,593	605,056,266
○ 대손충당금	275,211,980	234,737,860	40,474,120
○ 미수수익	0	0	0
나. 재고자산	40,355,380	18,866,130	21,489,250
○ 저장품	40,355,380	18,866,130	21,489,250
2. 비유동자산	49,333,812,171	44,292,019,937	5,041,792,234
가. 투자자산	324,000	324,000	0
나. 가동설비자산	48,628,278,221	43,887,096,657	4,741,181,564
자 산 총 계	51,413,921,390	45,705,109,520	5,708,811,870
1. 유동부채	42,972,690	36,931,270	6,041,420
가. 예수금	42,972,690	36,931,270	6,041,420
나. 미지급비용	0	0	0
2. 고정부채	0	0	0
부 채 총 계	42,972,690	36,931,270	6,041,420
1. 자본금	6,006,368,973	6,006,368,973	0
가. 원시자본금	6,006,368,973	6,006,368,973	0
2. 자본잉여금	50,125,429,158	42,383,037,245	7,742,391,913
가. 국고보조금	6,412,340,000	6,412,340,000	0
나. 도비보조금	1,309,694,000	1,309,694,000	0
다. 타회계보조금	28,472,360,800	27,672,360,800	800,000,000
라. 시설분담금	1,085,023,800	1,056,923,800	28,100,000
마. 원인자부담금	676,000,000	676,000,000	0
바. 재평가적립금	8,831,427,200	2,113,088,247	6,718,338,953
사. 기부금	3,338,583,358	3,142,630,398	195,952,960
3. 결손금	4,760,849,431	2,721,227,968	2,039,621,463
자 본 총 계	51,370,948,700	45,668,178,250	5,702,770,450

나. 손익계산서

(단위 : 원)

과 목	금 액		증 감
	2010년도(당기)	2009년도(전기)	
1. 영업수익	6,168,327,230	5,740,302,630	428,024,600
가. 급수수익	5,942,532,450	5,524,246,690	418,285,760
나. 급수공사수익	207,907,080	198,841,440	9,065,640
다. 기타영업수익	17,887,700	17,214,500	673,200
2. 영업비용	8,751,587,068	7,702,145,632	1,049,441,436
가. 원수및취수비	711,416,390	623,558,956	87,857,434
나. 정수비	2,713,930,770	2,445,347,470	268,583,300
다. 배수비	690,186,690	863,726,540	△173,539,850
라. 급수비	24,060,350		24,060,350
마. 일반관리비	888,178,257	1,044,548,720	△156,370,463
바. 징수및수용가관리비	514,129,570	562,536,270	△48,406,700
사. 급수공사비	195,952,960	210,638,970	△14,686,010
아. 감가상각비	2,881,551,141	1,934,202,716	947,348,425
자. 대손상각비	5,326,690	17,585,990	△12,259,300
차. 기타영업비용	0	0	0
3. 영업손실	2,583,259,838	1,961,843,002	△621,416,836
4. 영업외수익	574,545,603	580,030,133	△5,484,530
가. 이자수익	21,456,563	74,713,722	△53,257,159
나. 타회계전입금수익	52,832,050		52,832,050
나. 타회계지원금수익	500,000,000	500,000,000	0
다. 기타영업외수익	256,990	5,316,411	△5,059,421
5. 영업외비용	30,907,228	533,147,888	△502,240,660
6. 경상손실	2,039,621,463	1,914,960,757	△124,660,706
7. 특별이익	0	0	0
8. 특별손실	0	0	0
9. 당기순손실	2,039,621,463	1,914,960,757	△124,660,706

공 고

정선군공고 제2011-416호

2011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결정통지문 공시송달 공고

2011년 1월1일기준 개별공시지가를 2011. 5.31 결정·공시하고 개별 통지하였으나 토지 소유자 및 기타이해관계인의 주소 불명등으로 결정통지문을 교부할수 없어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11. 7. 11.

정 선 군 수

1. 공고명칭 : 2011. 1. 1기준 개별공시지가 결정통지문(반송분)
2. 공고기간 : 2011. 7. 11 ~ 7. 25(14일간)
3. 내 용 : 2011. 1. 1기준 필지별 개별공시지가
【필지별 소유자, 토지소재지, 반송사유】
4. 대상필지수 : 화암면 화암리 산508번지 외 4,282필지 (홈페이지 참조)
5. 기타 자세한 내용은 정선군청 세무회계과(☎ 033-560-228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선군공고 제2011-421호

정선군 풍수해저감종합계획 공고

자연재해대책법 제16조 규정에 의거 소방방재청으로부터 정선군 풍수해저감종합계획이 승인되어 동법시행령 제14조제6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4조의4 제2항의 규정에 의거 공람 공고합니다.

1. 주요 내용

- 가. 하천재해 분야 저감계획
- 나. 내수침수 분야 저감계획
- 다. 사면재해 분야 저감계획
- 라. 토사유출 분야 저감계획

2. 관계도서는 정선군청 건설방재과(☎033-560-2496)에 비치하고 일반인에게 열람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3. 공고기간 : 공고일로부터 30일간

2011. 07. 12.

정 선 군 수